

# 조례안예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4 - 4호

##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창원시 의회의장

### 1. 자치법규명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2. 제정이유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근거와 제반 사항을 마련하고, 공모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의 검토를 통하여 공모사업의 적정성 제고와 체계적·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 다.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라. 공모사업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마.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바.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 공모사업 성과에 따른 포상 근거를 규정함

###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안상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0
----------	-----

발의연월일: 2024. 1. 10.

발 의 의 원: 안상우 · 강창석 · 김영록 · 남재욱 · 박승엽  
성보빈 · 손태화 · 이원주 · 최정훈 ·  
황점복 의원(10명)

## 1. 제안이유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근거와 제반 사항을 마련하고, 공모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의 검토를 통하여 공모사업의 적정성 제고와 체계적·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공모사업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사. 공모사업 성과에 따른 포상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사업의 수행·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청하거나 시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공모사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타당성

-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 나.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경상남도 사업과의 연계성
- 다.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 라.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 마.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 바.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 등)

2.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3. 재정협의

- 가. 국비·도비·시비의 재원 비율
-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4. 사업효과

-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모사업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

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해야 한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의 취지와 제5조에 따른 검토결과를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의회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신청일 전에 해당 공모사업의 개요와 제5조에 따른 검토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시 또는 시의 출자·출연기관이 신청하고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2. 민간이 시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공모사업의 개요 등을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는 소관 상임위 간담회 또는 전체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2020. 6. 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